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민병덕 · 이정문
강준현 · 김종민 · 김원이
복기왕 · 이주희 · 권칠승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,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,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,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9제3항

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3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9제3항 전단 중 “제33조의2, 제33조의3”을 “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사람이”를 “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사람이”를 “자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”를 “제4항까지”로, “사람이”를 “자가”로 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잘못 지급된 경우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의3(종전의 제2호의2) 및 제3호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자”로 한다.
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제2호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제25조(수당등의 환수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

제25조(수당등의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9 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잘못 지급된 경우

③ -----제1항 및 제2항-----
자가-----

-----.

④ --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-----자가-----

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
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
있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
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
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
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
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
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
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
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(缺損
處分)할 수 있다.

제3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
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
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
2. 제7조의8제6항(제8조의4제2
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
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
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
는 누설한 사람

<신 설>

ㄱ.

⑤ -----
--제4항까지-----

-----자가-----

-----.

제33조(벌칙) ① -----

-----자는-----

1. -----

-----자

2. -----

-----자
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제7조의9제3항에서

2의2.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

3.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
료 또는 정보를 조회·사용·
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

② (생략)

<신 설>

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

2의3.

-자

3. -----

-----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제2호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

	<u>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